|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3)**  법석[2019]3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3)>이 2019년 2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6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3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 실무와 결부시켜 인민법원이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의 채권자 권리 행사 등 관련 법률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1.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접수 재정(栽定)을 내린 경우 그 이전에 채무자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회사강제청산비용, 아직 종결되지 않은 집행절차에서 발생한 평가비, 공고비, 보관비 등 집행비용은 기업파산법상의 파산비용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수시 변제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접수비, 집행신청비는 파산채권으로 간주하여 변제할 수 있다.   1. 파산신청이 접수된 후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되거나 제1차 채권자회의 개최 전에 인민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 관리인 또는 스스로 관리하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속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차입금을 제공하는 채권자가 기업파산법 제42조 제(4)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그 이전에 이미 채무자의 특정재산위에 담보설정이 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관리인 또는 스스로 관리하는 채무자는 상기 자금 차입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저당권 목적물 위에 파산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가 물권법 제199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변제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효력이 발생된 법률문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배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와 노동보험료 연체료를 포함하여 파산신청이 접수된 후에 발생한 체납금 연체료를 채권자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보증인의 파산절차 진입 재정(栽定)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는 그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보증채권은 보증인의 파산신청이 접수된 시점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일반보증의 보증인이 선소(先訴)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일반보증인의 파산절차에서 보증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 후 일반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책임이 확정된 후 파산배당률에 따라 배당한다.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의 관리인은 주채무자 또는 기타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인이 실제로 부담한 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파산절차 진입 재정(栽定)이 내려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보증인에게 각각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전액의 채권을 신고한 경우 그들 중 일방의 파산절차에서 변제를 받은 후 기타 일방에 대한 채권액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단, 채권자가 변제받은 액수가 그의 채권 액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갖지 아니한다.   1.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채권을 등기하되 신고인의 성명, 소속업체, 대리인, 신고채권액, 담보상황, 증거, 연락방식 등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된 채권신고등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성격, 액수, 담보재산, 소멸시효 경과 여부, 강제집행 기한 경과 여부 등 상황을 심사하고 채권표를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에 제출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채권표, 채권신고등기부 및 채권신고 자료는 파산기간에 관리인이 보관하며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열람할 권리가 있다.   1.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문서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관리인은 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 신고의 근거로 제출한 법률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의 채권 확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중재 또는 공증기관의 공증으로 강제집행력을 부여한 공증문서 등 방식으로 채권, 채무를 악의적으로 날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관리인은 심판감독절차를 통해 해당 판결문, 재정(栽定)문, 조정서를 발급한 인민법원 또는 직상급 인민법원에 법률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중재판정문의 취소 또는 집행취소, 채권공증문서의 집행취소를 신청한 후 다시 채권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 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유와 법률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해석 또는 조정을 하였음에도 이의인이 여전히 불복하거나 관리인이 해석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인은 채권자회의의 검사확인이 끝난 후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채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파산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중재합의 또는 중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정한 중재기구에 채권채무관계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는 피(被)이의 채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채권자표에 기재된 타인의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피(被)이의 채권자를 피고로 지지정하여야 한다. 채권표에 기재된 본인의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동일 채권에 대해 복수의 이인의이 존재하고 기타 이의인이 소송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단일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상황 보고서, 채권자회의 결의서, 채권자위원회 결의서, 관리인 감독보고서 등 파산절차 참여에 필수적인 채무자의 재무 및 경영정보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5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기 정보자료가 상업비밀과 연관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거나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기밀과 연관되었을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권자회의의 의결은 현장에서 표결하는 방식 외에도 관리인이 사전에 관련 의결사항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후 통신, 온라인 투표 등 비(非) 현장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비(非) 현장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인은 채권자회의 개최 후 3일 내에 서신, 전자우편, 공고 등 방식으로 표결 결과를 표결에 참여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업파산법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리계획안에 대한 조별 표결 진행 시 정리계획안에 의해 권익이 조정되었거나 권익에 영항이 초래된 채권자 또는 주주는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권익이 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권익에 영향이 초래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주주는 기업파산법 제83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정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회의 결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가 초래되었고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2. 채권자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법정(法定)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채권자회의에서 표결을 함에 있어 법정(法定)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채권자회의 결의 내용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5. 채권자회의 결의가 채권자회의의 직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인민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 의결사항에 대한 결의를 취소하는 재정(栽定)을 내릴 수 있으며 채권자회의에게 법에 따라 다시 의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 결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회의의 표결이 통신, 온라인 투표 등 비(非) 현장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채권자의 취소신청 기한은 채권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1. 채권자회의는 기업파산법 제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파산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규정된 채권자회의의 직권 행사를 채권자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는 채권자회의의 모든 직권의 행사를 채권자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원이 결의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는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회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채권자회의에 업무보고를 하고 인민법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69조에 규정한 채무자의 중대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사전에 재산관리방안 또는 재산현금화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권자회의에서 부결된 경우 관리인은 처분할 수 없다.   관리인은 처분 실시 전에 기업파산법 제6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0일 전에 채권자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는 기업파산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처분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근거문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관리인이 실시한 처분행위가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된 재산관리방안 또는 재산현금화방안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이 실시한 처분행위가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된 재산관리방안 또는 재산현금화방안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관리인에게 처분행위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 관리인은 처분행위를 시정하거나 채권자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실시한다.   이 규정이 실시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기업파산 관련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 실시일로부터 더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  **《中华人民共和国企业**  **破产法》**  **若干问题的规定（三）**  法释〔2019〕3号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若干问题的规定（三）》已于2019年2月2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6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9年3月28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9年3月27日  为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结合审判实践，就人民法院审理企业破产案件中有关债权人权利行使等相关法律适用问题，制定本规定。  **第一条** 人民法院裁定受理破产申请的，此前债务人尚未支付的公司强制清算费用、未终结的执行程序中产生的评估费、公告费、保管费等执行费用，可以参照企业破产法关于破产费用的规定，由债务人财产随时清偿。  　 此前债务人尚未支付的案件受理费、执行申请费，可以作为破产债权清偿。  **第二条** 破产申请受理后，经债权人会议决议通过，或者第一次债权人会议召开前经人民法院许可，管理人或者自行管理的债务人可以为债务人继续营业而借款。提供借款的债权人主张参照企业破产法第四十二条第四项的规定优先于普通破产债权清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其主张优先于此前已就债务人特定财产享有担保的债权清偿的，人民法院不予支持。  　 管理人或者自行管理的债务人可以为前述借款设定抵押担保，抵押物在破产申请受理前已为其他债权人设定抵押的，债权人主张按照物权法第一百九十九条规定的顺序清偿，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条** 破产申请受理后，债务人欠缴款项产生的滞纳金，包括债务人未履行生效法律文书应当加倍支付的迟延利息和劳动保险金的滞纳金，债权人作为破产债权申报的，人民法院不予确认。  **第四条** 保证人被裁定进入破产程序的，债权人有权申报其对保证人的保证债权。  　 主债务未到期的，保证债权在保证人破产申请受理时视为到期。一般保证的保证人主张行使先诉抗辩权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债权人在一般保证人破产程序中的分配额应予提存，待一般保证人应承担的保证责任确定后再按照破产清偿比例予以分配。  　 保证人被确定应当承担保证责任的，保证人的管理人可以就保证人实际承担的清偿额向主债务人或其他债务人行使求偿权。  **第五条** 债务人、保证人均被裁定进入破产程序的，债权人有权向债务人、保证人分别申报债权。  　 债权人向债务人、保证人均申报全部债权的，从一方破产程序中获得清偿后，其对另一方的债权额不作调整，但债权人的受偿额不得超出其债权总额。保证人履行保证责任后不再享有求偿权。  **第六条** 管理人应当依照企业破产法第五十七条的规定对所申报的债权进行登记造册，详尽记载申报人的姓名、单位、代理人、申报债权额、担保情况、证据、联系方式等事项，形成债权申报登记册。  　 管理人应当依照企业破产法第五十七条的规定对债权的性质、数额、担保财产、是否超过诉讼时效期间、是否超过强制执行期间等情况进行审查、编制债权表并提交债权人会议核查。  　 债权表、债权申报登记册及债权申报材料在破产期间由管理人保管，债权人、债务人、债务人职工及其他利害关系人有权查阅。  **第七条** 已经生效法律文书确定的债权，管理人应当予以确认。  　 管理人认为债权人据以申报债权的生效法律文书确定的债权错误，或者有证据证明债权人与债务人恶意通过诉讼、仲裁或者公证机关赋予强制执行力公证文书的形式虚构债权债务的，应当依法通过审判监督程序向作出该判决、裁定、调解书的人民法院或者上一级人民法院申请撤销生效法律文书，或者向受理破产申请的人民法院申请撤销或者不予执行仲裁裁决、不予执行公证债权文书后，重新确定债权。  **第八条** 债务人、债权人对债权表记载的债权有异议的，应当说明理由和法律依据。经管理人解释或调整后，异议人仍然不服的，或者管理人不予解释或调整的，异议人应当在债权人会议核查结束后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债权确认的诉讼。当事人之间在破产申请受理前订立有仲裁条款或仲裁协议的，应当向选定的仲裁机构申请确认债权债务关系。  **第九条** 债务人对债权表记载的债权有异议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应将被异议债权人列为被告。债权人对债权表记载的他人债权有异议的，应将被异议债权人列为被告；债权人对债权表记载的本人债权有异议的，应将债务人列为被告。  　 对同一笔债权存在多个异议人，其他异议人申请参加诉讼的，应当列为共同原告。  **第十条** 单个债权人有权查阅债务人财产状况报告、债权人会议决议、债权人委员会决议、管理人监督报告等参与破产程序所必需的债务人财务和经营信息资料。管理人无正当理由不予提供的，债权人可以请求人民法院作出决定；人民法院应当在五日内作出决定。  　 上述信息资料涉及商业秘密的，债权人应当依法承担保密义务或者签署保密协议；涉及国家秘密的应当依照相关法律规定处理。  **第十一条** 债权人会议的决议除现场表决外，可以由管理人事先将相关决议事项告知债权人，采取通信、网络投票等非现场方式进行表决。采取非现场方式进行表决的，管理人应当在债权人会议召开后的三日内，以信函、电子邮件、公告等方式将表决结果告知参与表决的债权人。  　 根据企业破产法第八十二条规定，对重整计划草案进行分组表决时，权益因重整计划草案受到调整或者影响的债权人或者股东，有权参加表决；权益未受到调整或者影响的债权人或者股东，参照企业破产法第八十三条的规定，不参加重整计划草案的表决。  **第十二条** 债权人会议的决议具有以下情形之一，损害债权人利益，债权人申请撤销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债权人会议的召开违反法定程序；  　 （二）债权人会议的表决违反法定程序；  　 （三）债权人会议的决议内容违法；  　 （四）债权人会议的决议超出债权人会议的职权范围。  　 人民法院可以裁定撤销全部或者部分事项决议，责令债权人会议依法重新作出决议。  　 债权人申请撤销债权人会议决议的，应当提出书面申请。债权人会议采取通信、网络投票等非现场方式进行表决的，债权人申请撤销的期限自债权人收到通知之日起算。  **第十三条** 债权人会议可以依照企业破产法第六十八条第一款第四项的规定，委托债权人委员会行使企业破产法第六十一条第一款第二、三、五项规定的债权人会议职权。债权人会议不得作出概括性授权，委托其行使债权人会议所有职权。  **第十四条** 债权人委员会决定所议事项应获得全体成员过半数通过，并作成议事记录。债权人委员会成员对所议事项的决议有不同意见的，应当在记录中载明。  　 债权人委员会行使职权应当接受债权人会议的监督，以适当的方式向债权人会议及时汇报工作，并接受人民法院的指导。  **第十五条** 管理人处分企业破产法第六十九条规定的债务人重大财产的，应当事先制作财产管理或者变价方案并提交债权人会议进行表决，债权人会议表决未通过的，管理人不得处分。  　 管理人实施处分前，应当根据企业破产法第六十九条的规定，提前十日书面报告债权人委员会或者人民法院。债权人委员会可以依照企业破产法第六十八条第二款的规定，要求管理人对处分行为作出相应说明或者提供有关文件依据。  　 债权人委员会认为管理人实施的处分行为不符合债权人会议通过的财产管理或变价方案的，有权要求管理人纠正。管理人拒绝纠正的，债权人委员会可以请求人民法院作出决定。  　 人民法院认为管理人实施的处分行为不符合债权人会议通过的财产管理或变价方案的，应当责令管理人停止处分行为。管理人应当予以纠正，或者提交债权人会议重新表决通过后实施。  **第十六条** 本规定自2019年3月28日起实施。  　 实施前本院发布的有关企业破产的司法解释，与本规定相抵触的，自本规定实施之日起不再适用。 |